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
----------	----

제출년월일 : 2018.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 5. 28.>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 12. 31.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6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까지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8.10.29. ~ 2018.11.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u> (생 략)	<u>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u>제7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전문개정 2011. 8. 4.]

□ **지방재정법 부칙<법률 제16287호, 2014. 5. 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김명기
연락처	(033) 330 - 2210